

# 기초과학연구원 운영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과 위치)**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한다)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자연과학대학 안에 둔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연구원은 자연과학대학의 연구 역량을 집중 발휘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초 및 응용 과학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연구 및 개발
2. 학술강연회, 학술심포지움, 연구발표회 등 연구 학술 활동에 필요한 학술 대회 개최
3. 간행물 발간 사업
4. 연구 진흥 발전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기구)**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연구원장
2. 운영위원회
3. 편집위원회

**제5조(산하 연구조직)** ①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(센터)를 둔다

1. 기초과학연구소
2. 창의연구소
3. <삭 제>
4. 양자물질초전도체창의연구소
5.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
6. 우주과학기술연구소
7. 수리과학연구소
8.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
9.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
10. <삭 제>
11. 에너지환경융합 키우리연구센터
12. 카이랄 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
13. 비대칭 촉매반응 디자인센터
14. 극한양자기능물질연구센터

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(센터)의 설치 및 해산, 인사, 내규,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,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연구원장)** ① 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행정업무)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자연과학대학/생명공학/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.

### 제 3 장 연구원(員)

제8조(연구원(員)) ① 연구원(院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(員)을 둔다.

1. 연구위원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  2. 상임연구원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   - 가. 수석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  - 나. 책임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  - 다. 선임연구원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  - 라. 연구원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  3. 객원연구원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  4. 연구원보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
- 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산하 연구소(센터)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.
- ③ 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원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연구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5 장 편집위원회

제12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

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3조(회의)**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6 장 재 정

**제14조(재정)**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15조(현금출납)**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.

**제16조(회계연도)**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**제17조(사업계획)**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사업실적)**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감사)**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8 장 해 산

**제20조(해산)**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## 제 9 장 보 칙

**제21조(세칙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7조(행정업무)의 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